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415
- 발 의 자 : 박수빈 의원 외 35명
- 발 의 일 : 2022년 12월 20일
- 회 부 일 : 2023년 2월 9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다목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도록 하여 다중밀집상황에 대한 자치경찰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3. 주요내용

- 가. 비고 3: 위 표의 다목 중 ‘다중운집행사’란 순간 최대 참가자가 1천명 이상으로 예측되는 행사를 말하며, 사무의 구체적 내용의 실시 여부 등은 주최자·주관자가 있는지 여부, 자체 질서확보

요원 또는 안전 관리 요원의 존재 여부, 행사 참가자의 수, 행사 실시 장소의 특성 및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타

(1) 입법예고(2023.2.14.~2.19.)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본 조례개정안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 1] 중 다목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다중운집 행사”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비고 3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제2조 관련)</p> <p><신 설></p>	<p>[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제2조 관련)</p> <p>비고 3: 위 표의 다목 중 ‘다중운집행사’란 순간 최대 참가자가 1천명 이상으로 예측되는 행사를 말하며, 사무의 구체적 내용의 실시 여부 등은 주최자·주관자가 있는지 여부, 자체 질서확보 요원 또는 안전 관리 요원의 존재 여부, 행사 참가자의 수, 행사 실시 장소의 특성 및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p>

- 자치경찰제도는 전체 경찰사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경비’ 분야의 사무를 지역별 치안 여건과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1년 7월 1일에 전면 시행되었으며,
 -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따라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자치경찰 사무는 관련 법령(「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제4조제1항제2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규정하고 있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②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 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질 수 있도록 미리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 ③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제2조 관련)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①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안전대책 협의 및 교통관리 지원 ② 행사장 주변 교통안전활동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 안전대책 협의 및 행사장 안전관리·안전활동 지원

비고 1: 위 표의 나목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한다.

비고 2: 위 표의 가목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중 '지역 내 주민'은 '지역 내에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으로 본다.

○ 본 개정조례안은 [별표 1] 비고에 “다중운집 행사”를 정의하고,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의 실시 여부를 자치경찰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별표 1,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에서 “다중운집 행사”의 자치경찰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업무 수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군중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으로 보임.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헬러윈 축제 중 밀집된 인파가 넘어지면서 다수의 사상자(사망 158명 등)가 발생한 참사가 발생하였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1에 따라 지역축제는 주최자가 있는 행사만 적용 대상으로 함에 따라, 주최자가 없는 행사인 이태원 헬러윈 축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중운집 행사”의 정의를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보다 상위법인 「경찰법」에서 통일적인 규정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주최·주관이 없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사중이므로, 관련된 법률안의 국회 입법과정 추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주최·주관 없는 행사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현황('23.2.20.기준) 〉

	발 의	주요 내용
1	임오경의원('22.11.1.) (의안번호 2118017)	대규모 인원 밀집이 예상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함(안 제66조의12 신설)
2	정우택의원 등 10인 ('22.11.2.)(2118043)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6조의11)
3	전봉민의원 등 22인 ('22.11.2.)(2118048)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정보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다수 군중의 밀집으로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특정한 지역 내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치신호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위치신호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66조의11 제2항~제6항 등)
4	안철수의원 등 11인 ('22.11.2.)(2118055)	주체·장소 등과 관련 없이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행사 등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해서도 지역축제와 마찬가지로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 등 마련(안 제66조제1항 및 제66조의11제1항)
5	김기현의원 등 13인 ('22.11.2.)(2118056)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의무화 조항 신설 등(안 제66조의13신설)
6	김용판의원 등 10인 ('22.11.3.)(2118078)	주최·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 등에 관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 조항을 신설함(안 제66조의11제2항)

	발 의	주 요 내 용
7	김영선의원 등 11인 ('22.11.4.)(2118104)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원활한 지역축제 진행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6조의11제5항 및 제6항 신설)
8	김도읍의원 등 11인 ('22.11.4.)(2118125)	인구밀집 등 사고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대해 특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특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6조의 13 신설)
9	조수진의원 등 10인 ('22.11.22.)(2118357)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는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등(안 제66조제1항 및 제66조의11제1항)
10	이헌승의원 등 12인 ('22.11.23.)(2118394)	지역축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역행사도 세분화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청 및 소방청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함(안 제66조의11 및 안 제66조의12제3항 신설)
11	조경태의원 등 12인 ('22.11.24.)(211846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군중이 몰리는 행사 등이 있을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사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원통제 등의 행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6조의11제5항 신설)
12	이태규의원 등 10인 ('22.12.5.)(2118683)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 또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안 제66조의11제2항 및 제4항 신설)
13	이명수의원 등 10인 ('22.12.6.)(2118697)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관리감독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66조의11제5항)
14	정부 ('22.12.28.)(2119224)	관계기관이 다수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권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와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진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등(안 제3조제5호의2 단서 신설 등)
15	윤준병의원 등 17인 ('23.1.2.)(2119293)	국가 등은 다중밀집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다중밀집인파사고에 대한 규정의 미비점으로 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에 정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 예시의 유형에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 자치경찰위원회 의견 : 부결 〉

- ‘다중운집행사’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지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 ‘다중운집행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경찰법)」상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기 위하여 명시된 용어로 그 개념, 범위, 규모 등에 관한 정의는 시·도 조례보다 상위 법규에 규정되어야 할 성격임.
 - 인원수를 기준으로 다중운집행사를 정의할 경우, 해당 인원수 미만의 행사는 자치경찰사무에서 배제되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지는 조례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 결과적으로 해당인원 수 미만의 행사는 국가경찰사무가 되어 법에서 다중운집행사 관리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배치됨.
- 그리고 「경찰법」상 다중운집행사 개념 규정과 관련,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경찰청, 서울경찰청의 의견 반영이 필수적이라 판단됨.

나. 세부내용 검토

- 안은 비고 3에 “다중운집 행사”를 ‘순간 최대 참가자가 1천명 이상으로 예측되는 행사’라고 정의하며, 사무의 구체적 내용의 실시 여부 등은 주최자·주관자가 있는지 여부, 자체 질서확보요원 또는 안전 관리 요원의 존재 여부, 행사 참가자의 수, 행사 실시 장소의 특성 및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이는 “다중운집 행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정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하여 조례에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다중운집 행사” 정의에서 ‘순간 최대 참가자가 1천명 이상으로 예측되는 행사’라고 하고 있는바, 1천명 미만의 행사의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가자 기준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중운집 행사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 및 안전관련 사고의 발생 위험성은 행사의 목적과 종류, 행사의 시간 및 장소, 행사의 주요한 시설물 및 물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¹⁾

○ 또한, 지난해 12월 30일 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개정 규정과 상충 가능성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같은 용어는 가능한 한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례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법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법령의 집행과정에서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²⁾ 다른 조례와의 정의를 통일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음으로 안 비고 3에서 “... 사무의 구체적 내용의 실시 여부 등은 주최자·주관자가 있는지 여부, 자체 질서확보 요원 또는 안전관리 요원의 존재 여부, 행사 참가자의 수, 행사 실시 장소의 특성 및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사무 실시여부를 자치경찰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1) 박영주·윤우석, “안전하고 편리한 다중운집행사 개최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한국 경찰연구』 제16권제4호, 2016년 겨울, 76-77면 참조.

2)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18년 6월, 83면 참조.

- 하지만,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시장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제5조) 및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경찰청에서 통보(제6조제1항), 안전 관리를 위한 시경찰청 지원 요청(제6조제2항) 등을 규정하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책임을 서울특별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음(붙임 1) 참조).

- 따라서, 현재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는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사무의 구체적 내용의 실시 여부 등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복적인 사무의 수행으로 혼란이 야기될 여지는 없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주최자·주관자가 있는 참가자가 1천명 이상인 옥외 행사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은 장이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하고, 「경찰법」 제4조제1항제2호 다목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는 자치경찰사무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있음(「경찰법」 제28조제4항).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

붙임 1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2. "안전 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5조(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시경찰청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 및 행사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
 2.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명 이상인 행사
 3.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장소별 1,00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행사
가. 행사 장소가 2개 이상의 자치구와 연결된 경우
나.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되는 동일한 내용의 행사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
 2.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3.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
 6.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대수를 고려한 주차통제계획
 7. 지휘본부 설치·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제반 조건
 8. 다중운집 행사 장소 및 접근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 다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 방안
 9.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 ④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관련 법령·법규나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원활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치구청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조정·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조정·보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조치사항)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경찰청장에게 안전 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고·재난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게 무정차 통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장대응)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 시 시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경찰서 또는 현장에 지휘 본부를 설치하여 음성과 확성기 등의 기자재를 활용한 안내, 호출, 유도, 경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